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4645 판결 [보증금반환청구]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준표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2695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2021. 8. 2.자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판단

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4,200만 원 및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살피건대, 원고의 기존 청구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이고, 당심에서 변경신청한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적 구성을 전혀 달리하고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상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허가 여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허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 변경신청한 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위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허가하면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교환적 청구원인변경이 부적법하여 허가되지 않는 이상 원래 청구에 대한 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원래 청구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체결하였다’를 ‘경영권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